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자료			
보도	2018. 12. 17.(월) 조간	배포	2018. 12. 14.(금)	
담당부서	연금금융실	윤진호 팀장(3145-5190), 김현중 선임(3145-5184) 김태진 팀장(3145-5199), 이두형 수석(3145-5192)		

제 목 : 금융꿀팁 200선 - ⑩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-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.fss.or.kr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105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”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 - ⑩ 연말연시,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.

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'금융관행 개혁 포털' 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'국민 참여방'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- 연금자산(‘퇴직급여 부담금 및 연금저축’)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 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에
 - 연금가입자는 납입·운용현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,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
 - 특히, ①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, 연금계좌[개인형퇴직연금(‘IRP’)] 및 연금저축펀드·신탁·보험]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추가 납입하거나,
② 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연장^{*}하기보다는 물가상승률,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
- * 퇴직연금 가입자의 90.1%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('17년 기준)

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

1. 연금계좌 **추가납입**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.
2. IRP **수수료 할인혜택**을 살펴보세요.
3. 퇴직연금(DC·IRP) 적립금의 **예금보호한도**를 확인하세요.
4. 더 나은 **연금계좌로 이전**할 수 있습니다.
5. 연금자산의 **실질수익률**을 높이세요.
6. 연금관련 정보는 ‘**통합연금포털**’을 활용하세요.

1

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.

-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(단,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), IRP는 연간 700만원(연금저축액 포함*)

* 예) '연금저축 400만원 + IRP 300만원(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300만원 + IRP 400만원)' 또는 'IRP에만 700만원' 납입(<표1> 참조)

- (세액공제율)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인 경우 16.5%,
총급여가 5,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.2%
- (초과납입액)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
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(<사례1> 참조)
- (IRP 가입자격) '17.7월 자영업자,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, 공무원
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*

* 가입시 자격요건 증명 필요[(예)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등, 근로자 : 재직증명서 등]

< [표1]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>

(단위 : 만원, %)

연간 소득구간		세액공제 한도			세액 공제율
총급여(근로자)	종합소득금액	전체	연금저축	IRP	
5,500만원 이하	4,000만원 이하	700	400	700	16.5
5,500만~1억2,000만원 이하	4,000만~1억원 이하	700	400	700	13.2
1억2,000만원 초과	1억원 초과	700	300*	700	13.2

* '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 축소

사례 1

◇ 연간 총급여가 5,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,000만원을 납입한 경우

→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
공제 가능(단,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)

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(사례)

(단위 : 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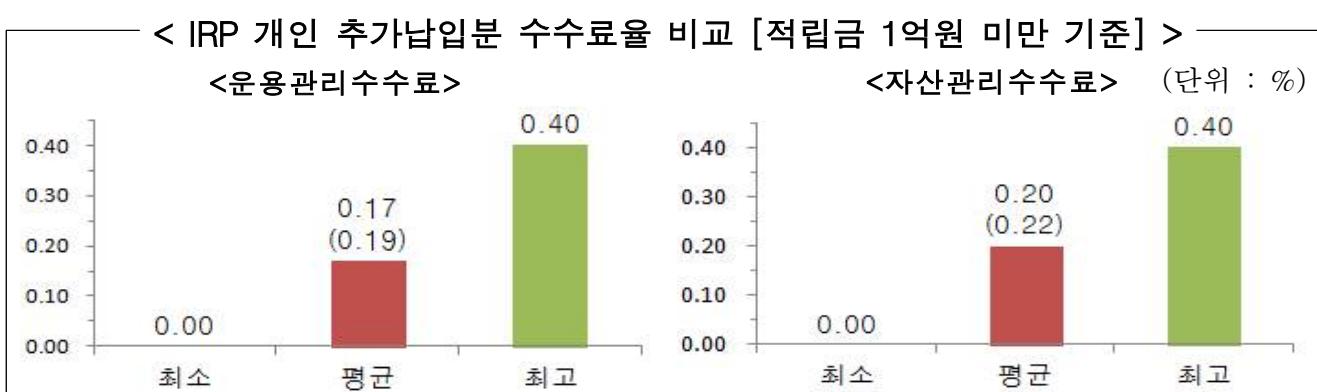
년도	특례적용 전(A)		특례적용 후(B)		차이 (B-A)
	납입액	세액공제액	납입액	세액공제액	
2017	1,000	92.4	700	92.4	-
2018	-	-	300	39.6	39.6

2

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살펴보세요.

-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·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,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·분석하고 가입할 필요
 - ※ 다만,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,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
- 또한,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·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*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

* 운용관리·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,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,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, 연금지급시 등



* ()는 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평균 수수료율

3

퇴직연금(DC, IRP)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하세요.

- 확정기여형퇴직연금('DC')·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,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*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

* '15.2.26. 「예금자보호법 시행령」 개정(개정 전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,000만원까지 보호)

< [표2]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금액(예시) >

구 분	일반 예금 등	DC·IRP 예금 등*	예금자보호금액
금융회사별 한도	5,000만원	5,000만원	
(사례1)	7,000만원	8,000만원	1억원
(사례2)	0원	1억원	5,000만원

* DC·IRP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예금보호한도 적용

- 한편, 저축은행 예·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,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*하고 있음에 유의 (<사례 2> 참조)

* 퇴직연금감독규정(§8-2(3)) : DC·IRP 가입자의 저축은행 예·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「예금자보호법시행령」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이내

사례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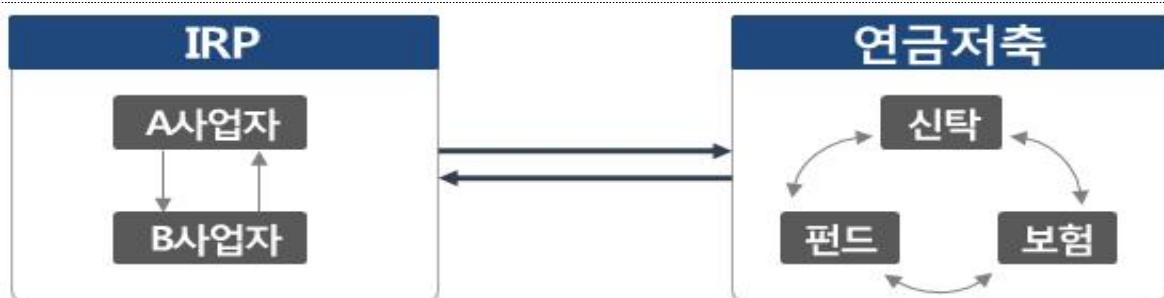
- ◇ 甲이 A은행 DC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4,000만원, C증권 IRP 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500만원을 운용하고 있는데,
 C증권 IRP 추가납입을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추가 예치하고자 함
 → (추가예치 가능금액) 500만원=예금보호한도(5,000만원)-기존 운용금액(4,000만원+500만원)

4

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- 연금계좌의 수익률·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,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

⇒ 계약 이전시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



주 : 1) IRP ↔ 연금저축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,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에 한함
 2) 최근 신규판매가 대부분 중단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

-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,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 요청

* 연금저축 ↔ 연금저축 이전시에는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처리 가능

5

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세요.

-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(또는 추가납입)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
 -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(금리)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*할 필요

< [표3] 참고 지표(예시) >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물가상승률(%)	1.3	1.3	0.7	1.0	1.9
평균 예금금리(%)	2.89	2.53	1.81	1.56	1.66

* (출처) 소비자물가상승률 : 국가지표체계(www.index.go.kr)

평균 예금금리 :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(1년 만기) 가중평균금리 (<https://ecos.bok.or.kr/>)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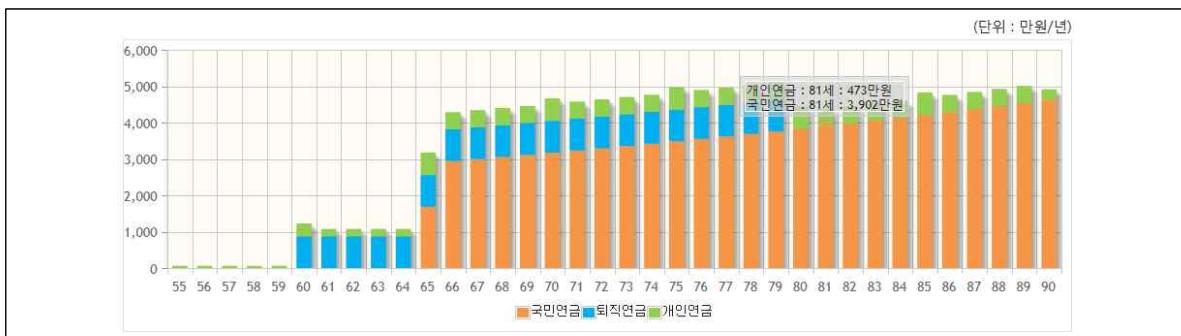
연금관련 정보는 ‘통합연금포털’을 활용해 보세요.

-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(100lifeplan.fss.or.kr)을 활용하면 편리
 - (내 연금조회)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·퇴직·개인연금의 가입정보*를 조회할 수 있음
 - * 가입일자, 총 납입금액, 연금 개시 예정일 등

① 국민연금							
가입자 구분	연금종류	연금개시년도	예상연금수령액(원/월)	미래가치 예상 연금액	비고		
사업장가입자	노령연금(개시전)	2040년	2,406,360원	최저 (3.1%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변경	계약상세
② 퇴직연금							
가입회사	상품유형	상품명	가입일	연금개시 예정일	적립금(원)	조회기준일	비고
A은행	DC	(주)A회사_DC플랜	2012년 03월 28일	2035년 03월 28일	19,557,412	2016년 09월 30일	계약상세
적립금 합계금액						19,557,412원	
③ 개인연금							
가입회사	상품유형	상품명	가입일	연금개시 예정일	적립금(원)	조회기준일	비고
B보험	일반연금보험	ABC연금보험 개인2종	1999년 09월 27일	2035년 09월 27일	19,034,749	2016년 09월 30일	계약상세
적립금 합계금액						19,034,749원	

- (예시연금액 조회)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*

*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, 배우자의 조회결과와 합산하여 연금설계를 해볼 수 있음



- (노후재무설계)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



상기 자료의 연금세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,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